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2호 중 “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”를 “식품의 유형”으로 한다.

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종류”를 “유형”으로 한다.

제64조제1항제2호 중 “1회”를 “1회(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원본”을 “원본 또는 사본”으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의사”를 각각 “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”로 한다.

별표 1 제4호 중 “위생모”를 “위생모 및 마스크”로 한다.

별표 14 제8호가목1)에 바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) 영업장 내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,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별표 17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너. 식품제조·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운반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자. 영업자는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운반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7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너. 식품소분·판매업자는 식품 등의 소분·운반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자. 영업자는 식품 등의 운반·보관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

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17 제7호에 고목 및 노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, 같은 표 제 8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식품접객업자는 식품 등의 조리·운반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노. 식품접객업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예방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과. 식품 등의 조리·운반·판매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리 등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23 Ⅱ 제3호에 제10호가목1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) 별표 17 제7호노목을 위반한 경우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3 Ⅲ 제3호다목 중 “제10호가목1)”을 “제10호가목1)·11)”로 한다.

별표 24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식품 등의 조리·운반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발열, 설사 등

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리 등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표 27 제1호라목 중 “위생모”를 “위생모 및 마스크”로 한다.

별지 제33호서식 제1쪽 영업허가(신고·등록)사항란 중 “식품등의 종류”를 “식품등의 유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2호 중 “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”를 “식품의 유형”으로, “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“식품의 종류”를 “식품의 유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1호나목 중 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”를 “식품의 유형”으로, “종류 및 제조방법이”를 “유형 및 제조방법이”로 한다.

별지 제52호서식 제2호 중 “원본”을 “원본 또는 사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0호서식 나목 중 “의사”를 “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다목 중 “증명하는”을 “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(이하 “신고관청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제42조(영업의 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조·가공하려는 <u>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</u> 및 제조방법설명서(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)	2. ----- <u>식품의 유형</u> ----- ----- -----
3. ~ 15. (생략) ② ~ ⑪ (생략)	3. ~ 1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⑪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신고사항의 변경)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영업신고증(소재지를	제43조(신고사항의 변경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,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을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제6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)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	유형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제64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) ① -----

현행	개정안
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 훈련을 면제한다.	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	2. ----- 1회(인증받은 연도의 차기연도를 기준으로 기산한다)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② ~ ④ (생략)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	⑥ 제5항-----

현행	개정안
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(實費)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.	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 시간, 실시방법,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⑦ ----- 제6항-----
제68조의2(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) ① (생략)	제68조의2(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

